

## 40 (第140回-財政經濟第1次)

기구가 대부분으로 입법기관인 시의회의원이 행정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기 곤란함. 물론 참여할 경우 집행부의 정보와 업무에 능동적으로 의회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장(場)이 마련된다는 장점이 있으나, 의회의 위상, 현행 자치제도의 견제균형의 대립적 구조, 일부 의원만 참여시 타의원 정보차단 등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모든 행정 위원회(자문기구)에 시의회 의원의 참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.

### ○ 안 제13조(회의 등)

- 심의자료를 E-Mail로 송부하고 E-Mail로 회신을 받는 원격심의 방식을 적용하고자 전자심의체(On-Line심의체) 도입하고 있으나
  - 심의전 사전검토 및 의견수렴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방안이나,
  - 위원회 성격상 토론을 통한 합의점을 도출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.
- 나머지 조항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봄.

## 5. 참 고 사 항

### 가. 위원회 정비 추진계획(2003. 1.15)

- 조직제도담당관 의견 : 위원교체 및 위원장 하향조정을 통한 활성화 조치

##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“전자심의”라 함은 회의 개최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·수신된 자료로서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### 제7조(정보화정책회의)

① 시장은 지역정보화의 원활한 추진과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·자치구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업무의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상호 의견을 조정·협의하기 위한 정보화정책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정책회의는 당해 정보화 사업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시 및 자치구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.

제10조의 제목 “(설치)”를 “(설치 및 구성)”으로 하고, 동조제2항중 “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”을 “위원장 1인”으로 하며,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위원장은 정보화기획단장이 되고, 위원은 정보화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정보화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관계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제10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,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중에서 임시 위원장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.

제1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전자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.

제16조중 “출석한 위원과 전문가”를 “출석 또는 전자심의에 참여한 위원과 전문가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